

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

(월명중 본관 리모델링 및 기타수선공사)

2012 . 07. .

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

1.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

◇ 용역내용

- 월명중 본관 리모델링 및 기타수선공사

- 용역개요

- 폐콘크리트 : 659톤
- 폐아스팔트 : 83톤
- 건축폐재류 : 291.2톤
- 혼합폐기물 : 2톤
- 건설폐기물수집·운반 : 1,035.2톤

1. 목 적

이 시방서는 '월명중 본관 리모델링 및 기타수선공사'에 있어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,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용역과업지시서이다.

2. 용 어

용역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「폐기물」 이란 쓰레기, 연소재, 폐유, 폐산,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,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
- ② 「생활폐기물」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
- ③ 「사업장폐기물」은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,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④ 「지정폐기물」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,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⑤ 「감염성폐기물」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,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3. 사업장의 범위

-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
-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- ③ 일련의 공사,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4.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- ① 폐기물은 그 수집, 운반, 보관,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, 운반, 보관, 처리한다.
-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, 가연성,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, 운반하여야 한다.
-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5.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

1) 사업장폐기물 배출자

- ① 대기, 수질, 소음,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
-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
-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,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
- ④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,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.

2) 배출자 신고

-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, 발생량, 처리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

3) 변경 신고

-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/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
-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
-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-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
- ⑤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6. 사업장폐기물의 인계, 인수

- 1)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, 운반,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전자인계·인수제도에 따라 등록 후 입력 폐기물을 처리한다(종전-간이 인계서를 작성제출).
- 2)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(지정폐기물이 아닌 것)
 - ① 일련의 공사,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 - ② 월평균 0.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샌드블라스트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 조각, 소각재, 안정화 고형화처리물, 폐촉매, 폐흡수제 폐흡착제
- 4)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~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

7.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

- ① 보관방법 :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,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 - ② 처리계약 :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(수집운반업, 철거업, 일반건설업, 중기업, 청소용역업자 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)
 - ③ 운반방법 :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,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
- 1) 운반을 위탁할 경우 :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2)
스스로 운반할 경우 :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
- ①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: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
 - 유효기간 : 3개월(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)
 - 신청서류 : 신청서, 차량등록증사본, 차량사진
 - 처리기간 : 3일
 - ② 처리절차
 -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(배출자)는 인계서(1부가 4매로 구성)의 배출자란을 작성,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.
 -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, 서명한 후 인계서 6번(배출자 보관용)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.
 -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.
 -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, 서명한 후 인계서 5번(운반자 보관용)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.
 - 처리자는 인계서 4번(처리자보관용)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인계서 4번(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)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.
 -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

8. 사후관리

-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관리대장기록 : "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"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처리확인서 :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"처리확인서"를 교부받아야 한다.
- ④ 폐기물인계서 :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처리실적보고 :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,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"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"를 제출하여야 한다.

9. 주의사항

-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,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,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

2.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특기사항

1. 시공 범위

- 건축 폐기물 처리
- 혼합 폐기물 처리
- 건설 폐기물 적재 및 운반

2. 시공 개요

- 용역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한 업체로서 배출사업자, 수집운반사업자 및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-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수집운반사업자, 최종처리 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양질의 재생골재를 분리하여 배출사업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3. 기타 사항

- 용역업체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 진행 및 완료 후 현장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.
- 본 용역 착수 전, 진행 중, 처리완료 사진을 각 공정별로 촬영하여 완료검사 요청 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본 용역 완료 후 폐기물량에 감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하여야 한다.
- 이상은 용역 개요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적정 처리토록 한다.